

군사회복지제도 실태와 추진방안

유 홍 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민주화 이후 군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권을 중시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의 복지와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대책 회의와 간담회 및 토론회가 열렸고, 특히 작년 7월에는 국회에서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하였으며 10월에는 국방부에서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정착하고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우리 군의 실태를 살펴보고 군사회복지제도의 추진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군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추진방안

1. 병영문화의 문제

우리 군은 정치변동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군부 정치화와 정치군인의 정권장악 군부독재 추진을 위한 군의 정치적 이용 등으로 병영문화의 왜곡을 가져 왔다. 또한 사회 저변에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실적과 결과 중심, 인권보다 임무수행이 우선시되는 군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악·폐습을 척결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병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의 관계 확립: 신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동기를 유발하여 목표달성을 극대화 하고, 대화와 상호 인정하는 리더십과 팔로우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직과 성실하게 근무하는 풍토와 조직 문화가 요구된다.

○ 개방형 병영 환경 조성 : IT시대에 부합한 부대환경과 건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활용, 개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사를 공개하며 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개방의 병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의 질을 개선하고 G.P 등 격오지 특수 근무지역의 병영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 병영생활이 '수용'이라는 개념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의 개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군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문제

1) 관련법 체계

국방관련 법령은 법률 44건, 명령 321건(대통령령 127, 부령 58, 훈령 136)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병들의 문제가 사회복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부대별로 사고 예방과 지휘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잦은 전출, 격오지 근무, 자녀 교육의 어려움 및 현지생활의 부적응 등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병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인권 침해 예방 및 군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 법체계 정립: 군사회복지 법제화 방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특별법 형태로 새롭게 만드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군인사법 51조의 4(군사회복지)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군사회복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군인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법은 쉽게 법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인가족과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안은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에 ③항 국군의 사기 양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항을 추가하여 관련 법률 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후 가칭 '군사회복지법'을 만들고 그 대상자는 현역과 군무원, 가족과 제대 및 전사·상자의 군인 및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구 분	군인사법 일부 개정	군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헌 법	· 헌법에 근거 없음	·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③항 국군의 사기양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신설)
법 률	· 군인사법 제51조의 4 군사회복지(신설)	· 헌법 제39조 ③에 의거 가칭 '군사회복지 기본법'(제정)
장·단 점	· 법제화 용이(시간, 방법) · 대상/내용 : 군인 위주	· 군인과 군 관련 대상자의 포괄적 사기 및 복지 추진 근거 마련

<표 1> 군사회복지 관련 법제화 논의(안) 비교

2) 인력 및 조직 운용분야

창군 이래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장병들의 소원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양성 및 보수 교육기관에 '상담 기법' 교육을 위한 전문교관 00명을 보직하고, 일선 부대에서는 제대별로 부대 여건에 따라 군종장교(병), 군의관 및 주임원사를 임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병영생활 고충 상담관'은 상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데 각종 제한을 받는 문제점 있다.

○ 인력 / 조직 보완: 현재 제대별,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고예방 및 고충처리제도에 추가하여 군사회복지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병사들의 소원 및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군기본권전문상담관'을 보직 및 운용하는 방안은 <표 3>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예방 중심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야전병원 이상의 군병원에서는 의료 및 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중심의 군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 반 부 대					군 병 원
부 대	군사·사여단	연 대	대 대	중 대	야전병원 이상
책 임	군사회복지사		인사장교	선임소대장	군사회복지사
구 성	· 인사, 헌병 법무, 군종	· 헌병파견대장 · 군종장교 · 주임원사	· 군의관 · 주임원사 · 군종병	· 행정보급관	· 정신의료 군사회복지사 · 의료 군사회복지사
상담관	군기본권전문상담관(간부)		군기본권 전문상담(병)		의정장교(심리/사회사업)

<표 2> 인력 및 조직 운용(안)

3) 국방 예산 분야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2006년도 현재 22조 5,117억으로 전년도 대비 1조 6,903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중 전력 투자비를 제외한 육군의 경상운영비는<표 1>과 같이 66.7%인 15조 135억 원이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항목은 인건비(60.8%)와 급식비(12.1%) 등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낮은 복지관련 예산의 편성은 군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결국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된다.

단위 : 억원

인 건 비	급 식	피 복	교육/부대활동	장비 운영	시 설 물	기 타
4조 2,272	8,761	1,964	3,588	2,846	7,902	899

<표 3> '06년 육군 경상유지 예산

○ 군사회복지 예산 편성: 예산은 중·장기적인 군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 군사회

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신설 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와 제대별로 시행하게 될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는 군인과 가족(자녀 포함) 및 제대군인에 대한 세부 분야별 군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군사회복지제도를 활성화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군사회복지의 현 실태와 제도의 추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사회복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인 측면으로 리더십과 팔로우십간의 관계 확립, 개방형 병영 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군사회복지 관련법 체계정립, 인력/조직의 보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고 군인 가족 역시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그 실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신성한 직업인과 그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방부. 2005. 『국방저널』, 국방부.
 유흥위. 2005. “군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병영문화 추진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육군본부. 1999. 『육군문화』, 육군본부.
 이홍윤. 2005. ‘군사회복지의 제도’, 『Social Worker』, 7월호, 사회복지사 협회.
 Daley, J.G. 1999. 『Social Work Practice in the Military』, New York : Haworth Press.